당직및비상근무규정

제 정 1998.09.11 개 정 2002.02.22 개 정 2003.09.02 개 정 2006.06.01 개 정 2008.04.18 개 정 2012.03.07 개 정 2012.03.07 개 정 2013.10.15 개 정 2014.02.25 개 정 2018.08.22 개 정 2019.08.2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당직근무

제2조(당직의 구분)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.

- ② 일직은 휴무일에 두며,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<개정 2006.06.01>
-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.
- ④ 관로지사는 지사(사업소) 실정을 고려하여 비상출동상황반을 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19.08.21> 제3조(당직비)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4조(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)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 또는 휴식하게 할 수 있으며, 휴식 간에는 간소한 복장 착용이 가능하다. 다만, 당직명령자는 당해 사업장의 규모, 근무성격, 특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대취침을 금지하고 철야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.<개정 2008.04.18>
 -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오후에 휴무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다. 다만 업무형편상 그 휴식 기간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으며, 각 사업장(본사는 경영지원본부장, 지사는지사장)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08.04.18, 2013.10.15>
- **제5조(당직명령 및 변경)** ① 당직명령은 당직담당부서장인 당직명령자가 근무명령 예정 월 7일전 까지 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04.21, 2014.02.25>

-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, 휴가, 교육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변경 및 대근원서(별지 제1호)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 또는 퇴직시에는 우선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대체근무자를 선정한다.<개정 2008.04.18>
- ③ 신규 임용직원은 임용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1인 근무의 경우는 수습기간 종료 후로 한다.<개정 2014.02.25>
- ④ 여직원은 일직근무에 한하여 수행하며, 사업장별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03.09.02> 제6조(보고) ①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감독관청 또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당직실에 부착된 중요사항이나 상사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각종 보고 계통도에 따라 신속, 정확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및 특이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 또는 별도 상황 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하고, 익일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 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신고 및 인계인수)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일직근무자 및 휴무일의 숙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 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06.01>
 -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(별지 제2호), 당직근무표찰(별지 제3호), 기타 필요한 당직물품을 인수·확인하고 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명령자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무자간에 인계·인수한다.<개정 2006.06.01>
- 제8조(준수사항) ① 당직근무자는 전원 취침하거나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,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상황근무자가 긴급 및 비상상황의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지사 근무자는 본사근무자에게, 사업소 근무자는 지사 근무자에게 보고 후 동 상황에 대응하고 연락망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8.21>
 -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, 당직근무 표찰을 상의 왼쪽 가슴에 패용하여야 한다.
 -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수칙(별지 제4호) 및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제9조(당직실의 위치) ① 당직실은 방범, 방호,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,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상시 교대 근무지사 및 상황실 운영 등으로 당직근무를 겸하는 지사는 책임자 및 근무자의 위치를 당직실로 운영한다. 단, 지사의 형편에 따라 지사장은 한국가스공사와 합동근무 장소 등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당직의 편성) ①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 근무전임자 1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4.02.25>
 - 1. 2인 이상으로 함이 곤란한 경우
 - 2. 유관기관 및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당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2인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

판단되는 경우

- 3. 평상시 본사의 경우
- ② 당직근무자는 부장 이하 직원으로 구성하되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당직책임자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, 비상사태 및 특별히 당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은 별도의 기준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평상시 본사의 경우는 차장 이하로 운영한다.<개정 2006.06.01, 2012.03.07, 2014.02.25, 2018.08.22>

제11조(당직의 면제) 당직의 면제자는 다음과 같다.

- 1. <삭제 2009.06.29>
- 2. 비서업무 담당직원
- 3. 노조전임자
- 4. 휴직, 본사부(지사부) 발령자,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자<개정 2019.08.21>
- 5. 정년퇴직일이 6월 미만인 임금피크제 직원<신설 2008.04.18, 개정 2019.08.21>
- 6. 전문적인 지식, 기능, 경험을 요하는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및 기타 필요한 사유로써 당직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<개정 2009.06.29>
- 제12조(대기차량) 본사 및 지사에 대기차량을 두고 당직책임자가 운영하되 돌발사고 및 긴급업무용 외에는 운영하지 못한다. 단, 사업장의 기능, 성격상 또는 운전원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6.06.01, 2012.03.07>
- 제13조(열쇠관리) ①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가 비상열쇠를 관리한다.
 - ② 각 사무실 최종 퇴실자는 당직근무자에게 퇴실함을 통보하고 당직근무자에 의한 사무실 등의 잠금 여부 및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8.21>
- **제14조(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)**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.
 - 1. 방범·방호·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·점검(근무시간 중 2회 이상)
 - 2.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
 - 3. 문서의 수발 · 인계 또는 관리
 - 4. 각 부서의 사무실 비상열쇠 관리
 - 5.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
 - ② 보안 및 방화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별(혹은 부서별)로 보안점검표를 작성, 비치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9.08.21>
 - ③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업무성격상 보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당직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긴급사태시 임무) ① 당직근무자는 사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02.25>

- 1. 관할 소방관서 연락 및 상황팀과 당직담당부서장 보고
- 2. 사내화재 경보
- 3.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
- 4. 중요서류 및 물품의 안전지출
-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인의 침입으로 긴급한 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1. 관할경찰서 및 관계기관에 연락
- 2.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
- 3. 자체 경비능력으로 응급조치
- ③ 제 1, 2항의 경우에는 보고계통도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지사 비상출동상황반은 배관 및 공급관리소 이상상황 발생과 사고신고 접수 시 신속히 응급안전 조치를 취한다.<신설 2019.08.21>

제16조(비치서류 및 비품)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.

- 1. 당직근무일지
- 2. 직원 비상소집 및 연락대장
- 3.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(해당시)
- 4. 관계기관 당직실 및 전화번호부
- 5. 무기고(해당시) 및 비밀열쇠함
- 6. <삭제 2008.04.18>
- 7.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
- 8. 기타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
- ② 당직실 부착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비상소집 연락체계도
- 2. 당직근무수칙
- 3. 각종보고 계통도
- 4. 기타 당직 및 비상소집에 필요한 사항
- ③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, 휴대전화, 요도,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제17조(점검) ① 사장 또는 지사장이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·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.
 - ② 당직책임자는 사내 및 지사 당직근무상태를 순찰 또는 전화, 전자문서 등에 의한 방법으로 2회 이상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상 유무사항을 상급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비상근무

- 제18조(비상근무의 목적)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.
- 제19조(비상사태의 정의) 비상사태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당해 기관의 장(본사 : 사장, 지사 : 지사장, 이하 "기관장"이라 한다)이 비상사태라고 정하는 상황을 말한다.<개정 2006. 06.01, 2012.03.07>
 - 1.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때
 - 2. 보안상의 중대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상황이 급박하고 확실한 때
 - 3. 중대한 가스계통사고 및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긴급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
- **제19조 1(비상근무의 구분 및 근무요령)** 제19조 규정에 따른 비상사태시 비상근무체제는 관심(Blue), 주의(Yellow), 경계(Orange), 심각(Red) 4단계로 구분하며, 세부근무요령은 공사 재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.<신설 2008.04.18 >
- 제20조(비상상황의 보고) ① 제19조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상상황을 보고하고 비상소집에 관한 명령을 대기하여야 한다.
 - 1. 본사 : 비상업무담당 부서장 경유 사장<개정 2006. 06.01, 2012.03.07>
 - 2. 지사 : 비상업무담당 부서장 경유 지사장
 - ② 단, 안전보건관리절차서 제11조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재난관리절차서에 따라조치한다.<개정 2008.04.18>
- 제21조(비상소집 명령) ① 당해 기관장은 제20조에 의하여 보고 받은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상소집을 명하여야 한다.
 - ② 기관장 부재시에는 직제상 차하급자가 이를 대행한다.
- 제22조(비상소집 통보) ① 비상소집의 통보는 공사가 제공한 통신기기 및 전화·전보·통신 등으로 하되, 부서장이 별도 정하는 연락계통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3.07>
 - ② 제1항의 통보내용은 비상사유, 소집기간 및 장소 등이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한다.
- 제23조(비상소집 통보책임 및 의무) ①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 계통에 의거 비상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각 부서장은 사전에 비상연락망을 수립하고 부서별 통보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통보책임자로 지명된 자는 부서 직원에게 비상통보의 책임을 진다.
 - ④ 비상통보를 받은 직원은 비상연락 계통에 따라 부서 직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연락체계의 유지)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② 직원의 거주지 현황을 소속사무실과 당직실에 항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직원은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본인이 사내 전산망(인트라넷)에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2008.04.18>
- 제25조(장거리여행신고) <개정 2006.06.01><삭제 2008.04.18>

제26조(비상소집 후련) ① 당해 기관장은 비상사태시 임직원의 비상소집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비상소집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. 1. 임직위 2. 간부급직원(3급 이상)<개정2008.04.18> 3. 예비군 4. 민방위 5. 기타 당해 기관장이 소집대상을 별도로 지정

③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소집에 불응하거나 비상연락임무 및 훈련을 태만히 한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 · 심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제27조(보칙)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

칙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】<개정 2012.03.07, 2018.8.22, 2019.08.21>

		변경	변경		담 당	부 장	
	당직		원	관 부 서			
1. 수명사형	1. 수명사항						
20 년	월 일	직	처(실,센터)	직위	성명	(인)	
20 년	월 일	직	처(실,센터)	직위	성명	(인)	
2. 대근 및 변경사항							
20 년	월 일	직	처(실,센터)	직위	성명	(인)	
20 년	월 일	직	처(실,센터)	직위	성명	(인)	
3. 사유 : 대근 위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변경							
			년 월	_	일		
제출자	: 소속	Z	위	성명		(인)	

^{*} 변경 및 대근 사유 발생자가 제출할 것

【별지 제2호】<개정 2018.8.22>

당직근무일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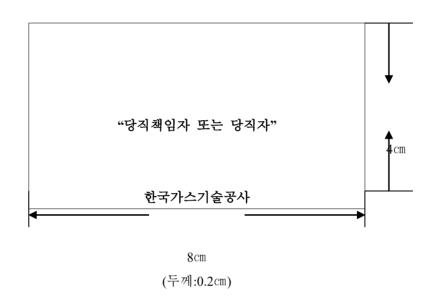
당직근무일지				결	담	당	부(팀)장	
년	월 일 요일(숙, 일)직			재				
당직자				당직책역	임자		·	
지시받은 사항				조치사항				
지시한 사항				조치결과확인				
문서처리상황 보고사항					ı			
특기사항				종류	Ę	날송	접수	인계
		근무자현황						
				소속		인원수	근무시간	
기타사고								
	차량번호	운전원	운행사항		Ē	물품	문서	기타
대기차량				인계사항				

(※사업장 특성상 양식은 변경 사용가능)

【별지 제3호】

당직근무표찰

1. 규 격



2. 제작방법

가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글자의 크기	글자의 종류	글자의 색채
한국가스기술공사	20포인트	로고체	검정색
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자	26포인트	고딕체	검정색

- 나. 재료는 백색 아크릴을 사용한다.
- 다. 뒷면에 옷핀을 달아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.

【별지 제4호】

당직근무수칙

- 1. (책임) 당직근무자는 근무기간 중의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2. (근무)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요령에 의거 철저히 근무하여야 한다.
- 3. (감독) 당직근무자는 근무자를 관장하여 근무를 감독하여야 한다.
- 4. (순시)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사옥을 순시하여 화재, 도난 및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.
- 5. (긴급사태시) 긴급사태발생시 당직근무자는 무기고 등 중요부분에 대한 경계강화, 응급조치와 동시에 직원비상소집연락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.
- 6. (보고) 근무 중에 발생한 각종 사태 및 제반 사고에 관하여 응급조치와 동시에 보고계통에 의거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.
- 7. (복장) 당직근무자는 간소한 복장과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고 단정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한다.
- 8. (인계·인수)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에 관한 일체를 인수인계자 상호간에 확실하게 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9. (국기관리) 당직근무자는 국기관리상태를 점검 ·확인하여야 한다.
- 10. 기타
 - 가. 당직근무자는 대기차량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.
 - 나. 당직근무자는 근무상황을 비치된 각종 기록부에 기록 · 인계하여야 한다.
 - 다. 지정된 당직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
 - 라. 출근시간 전에 전 비상구를 개방하여 환기시킨다.

한국가스기술공사

【별지 제5호】장거리여행 신고대장<삭제 2008.04.18>